

●국토해양부고시제2012-818호

경북김천 혁신도시 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경북김천 혁신도시 개발사업에 대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경북김천 혁신도시 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실시계획 변경의 세부내용 및 관계도서는 경상북도(053-950-3861), 김천시(054-420-6483),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북혁신도시사업단(054-420-7542), 경상북도개발공사(053-602-7000)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관계도면 등 게재생략).

2012년 11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경북김천 혁신도시 개발사업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가. 위치 : 경상북도 김천시 남면 용전리·운남리·옥산리, 농소면 월곡리·신촌리 일원

나. 면적 : 3,815,131㎡

3.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시행자의 명칭	주 소	대표자의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이 지 송
경상북도개발공사	경상북도 경산시 옥산동 731번지	김 영 재

4.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가. 사업착수일 : 2007년 3월 19일(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일)

나. 사업준공일 : 2012년 12월 31일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불임(관계도면 게재생략 : 관계도면은 경상북도, 김천시, LH 경북혁신도시사업단, 경상북도개발공사에 비치)

【불임】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I.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없음)

○ 구역명 : 경북김천 혁신도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위 치 : 경북김천 혁신도시 개발사업 전체

○ 면 적 : 3,815,131㎡

II.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없음)

1. 용도지역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2. 도시계획시설결정조서(변경없음)

III.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주1) 변경사항은 ‘ 지정내용 ⇒ 변경내용 ’으로 표기(이하 같음)

-주2) 신설사항은 ‘ 신설내용(신설) ’로 표기(이하 같음)

-주3) 폐지사항은 ‘ 지정내용(폐지) ’로 표기(이하 같음)

가. 혁신클러스터용지(변경)

- 1) 이전공공기관 용지(변경없음)
- 2) 산·학·연 클러스터용지(변경)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클	클1~클6, 클8	용도 허용	■ 기정 • 업무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중 가목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사에 한한다.) • 교육연구시설(학원 및 유치원을 제외한다) • 전시장 • 의료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 가목의 종합병원·한방병원, 종합병원에 준하는 100병상 이상병원에 한한다.) • 노유자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중 다목의 근로복지시설에 한한다.) • 공장(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4 제2호 차목 (1) 내지 (6)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 • 창고시설 • 벤처기업집적시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소프트웨어진흥시설(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 근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바목에 한한다.) • 혁신도시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친 시설 ■ 변경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아래 지식산업센터,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창업보육센터 시설의 부대(지원)시설로써 개별 법률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¹⁾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및 한방병원 및 100 병상이상 병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학원과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 노유자 시설 중 근로복지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가목의 공공업무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바목의 시설을 포함) • 일반업무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나목의 일반업무시설로써,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된 시설²⁾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과 그 지사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2항의 지식산업 및 제6조 제3항의 정보통신산업의 본사 및 사무소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 창고시설 • 공장(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7> 제2호 사목의 공장) • 지식산업센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시설) • 벤처기업집적시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서 정한 시설) • 소프트웨어진흥시설(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에서 정한 시설) • 창업보육센터(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서 정한 시설) • 지역전략산업 및 광역경제권 선도산업과 관련된 시설로,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혁신도시관리위원회가 심의·결정하는 시설³⁾

- 1)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지원시설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4의 2항의 시설에 한하며(단,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차목의 단란주점, 타목의 안마시술소, 안마원 및 노래연습장은 제외), 동 시설의 건축연면적은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음
- 2)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2항 및 동 시행규칙 제2조 제7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에 적시된 시설(본사 및 사무소 포함)에 한함
- 3) 「불허용도」에 포함된 시설에 대해서는 혁신도시관리위원회의 심의·결정에도 불구하고 클러스터 용지내 입지를 허용할 수 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클	클1~클6, 클8	용도 불허	■ 지정 •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 변경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단독주택 및 제2호 공동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차목의 단란주점, 타목의 안마사술소, 안마원 및 노래연습장, 과목의 고시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 종교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 다목 격리병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 노유자시설(근로복지시설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 수련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 숙박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 위락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 교정 및 군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 묘지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 장례식장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500% 이하
		높이	-
		배치 및 건축선	•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지침도에 따른다.
		형태 및 외관	• 건축물의 외관 - 혁신도시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재료 사용을 권장(유리, 스틸, 알루미늄 재료 사용)하여 첨단디지털 이미지와 친환경적인 이미지가 공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혁신클러스터용지의 특색에 맞추어 사용한다. • 클러스터 용지내 담장 설치는 입주기관의 특색에 맞추어 달리할 수 있다. • 색채, 옥외광고물, 야간경관계획 - '3-4.라 경관 및 공공부문에 관한 계획의 7) 색채기준에 관한 계획, 8) 옥외광고물에 관한 계획, 9) 야간경관에 관한 계획'기준을 따른다.

■ 공동주택 인접블록(변경)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클	클7	용도 허용	■ 지정 • 업무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중 가목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사에 한한다.) • 교육연구시설(학원 및 유치원을 제외한다) • 전시장 • 의료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 가목의 종합병원·한방병원, 종합병원에 준하는 100병상 이상병원에 한한다.) • 노유자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중 다목의 근로복지시설에 한한다.) • 창고시설 • 벤처기업집적시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소프트웨어진흥시설(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 근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바목에 한한다.) • 혁신도시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친 시설 ■ 변경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아래 지식산업센터,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창업보육센터 시설의 부대(지원)시설로써 개별 법률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1)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및 한방병원 및 100 병상이상 병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학원과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 노유자 시설 중 근로복지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가목의 공공업무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바목의 시설을 포함) • 일반업무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나목의 일반업무시설로써,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된 시설2)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과 그 지사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2항의 지식산업 및 제6조 제3항의 정보통신산업의 본사 및 사무소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 창고시설 • 지식산업센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시설) • 벤처기업집적시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서 정한 시설) • 소프트웨어진흥시설(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에서 정한 시설) • 창업보육센터(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서 정한 시설) • 지역전략산업 및 광역경제권 선도산업과 관련된 시설로,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혁신도시관리위원회가 심의·결정하는 시설³⁾

- 1)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지원시설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4의 2항의 시설에 한하며(단,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차목의 단란주점, 타목의 안마시술소, 안마원 및 노래연습장은 제외), 동 시설의 건축연면적은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음
- 2)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2항 및 동 시행규칙 제2조 제7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에 적시된 시설(본사 및 사무소 포함)에 한함
- 3) 「불허용도」에 포함된 시설에 대해서는 혁신도시관리위원회의 심의·결정에도 불구하고 클러스터 용지내 입지를 허용할 수 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클	클7	용도	불허	■ 지정 -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 변경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단독주택 및 제2호 공동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차목의 단란주점, 타목의 안마시술소, 안마원 및 노래연습장, 파목의 고시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 종교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 나목 격리병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 노유자시설(근로복지시설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 수련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 숙박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 위락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 교정 및 군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 묘지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 장례식장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500% 이하
		높이		-
		배치 및 건축선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지침도에 따른다.
		형태 및 외 관		- 건축물의 외관 - 혁신도시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재료 사용을 권장(유리, 스틸, 알루미늄 재료 사용)하여 첨단디지털 이미지와 친환경적인 이미지가 공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혁신클러스터용지의 특색에 맞추어 사용한다. - 클러스터 용지내 담장 설치는 입주기관의 특색에 맞추어 달리할 수 있다. - 색채, 옥외광고물, 야간경관계획 ‘[3]-4라 경관 및 공공부문에 관한 계획의 7) 색채기준에 관한 계획, 8) 옥외광고물에 관한 계획, 9) 야간경관에 관한 계획’기준을 따른다.

나. 상업·업무용지

1) 상업업무용지(변경)

■ 중심상업(특별계획구역 제외)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S1 S2	상4,5,6,7 상3	용도	허용
			권장
			불허
		구 분	KTXY역세권(S1)
		건폐율	80%이하
		용적률	1,200% 이하
		높이	-
		배치 및 건축선	건축한계선 및 벽면지정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지침도에 따른다.
		형태 및 외관	- 건축물의 외관 - 벽면지정선에 면한 1층부 외벽면은 70%이상을 투시형으로 하며 셔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으로 처리. 다만, 건축물의 용도상 부득이하여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한 경우는 제외 - 지붕·옥상층은 조형적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경시설을 하여야 한다. - 상업·업무시설용지내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가 있는 경우, 보행 등의 안전성을 위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관련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달리할 수 있다. - 옥상구조물 차폐 - 건물 옥상의 구조물 및 옥탑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라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한다. - 건물 옥상에는 도시생태복원을 위하여 가능한 한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 - 에어컨의 실외기 및 안테나 등은 옥상 또는 가로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도시미관 및 형태, 색상 등을 고려하여 차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색채, 옥외광고물, 야간경관계획 ‘[3]-4.라 경관 및 공공부문에 관한 계획의 7) 색채기준에 관한 계획, 8) 옥외광고물에 관한 계획, 9) 야간경관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다.

■ 일반상업(상업업무)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S3	상1,2 업1,2,3	용도	허용
			권장
			불허
		구 분	상업업무(S3)
		건폐율	70~80%이하
		용적률	1,000%이하
		높이	-
		배치 및 건축선	건축한계선 및 벽면지정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지침도에 따른다.
		형태 및 외관	- 건축물의 외관 - 벽면지정선에 면한 1층부 외벽면은 70%이상을 투시형으로 하며, 셔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으로 처리. 다만, 건축물의 용도상 부득이하여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한 경우는 제외 - 지붕·옥상층은 조형적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경시설을 하여야 한다. -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가 있는 경우, 보행 등의 안전성을 위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관련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달리할 수 있다. - 옥상구조물 차폐 - 건물 옥상의 구조물 및 옥탑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라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한다. - 건물 옥상에는 도시생태복원을 위하여 가능한 한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 - 에어컨의 실외기 및 안테나 등은 옥상 또는 가로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도시미관 및 형태, 색상 등을 고려하여 차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색채, 옥외광고물, 야간경관계획 ‘[3]-4.라 경관 및 공공부문에 관한 계획의 7) 색채기준에 관한 계획, 8) 옥외광고물에 관한 계획, 9) 야간경관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다.

■ 기정

<별표1> 상업업무시설 용지의 건축물 용도

구 분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KTX역세권 (S1, S4)	숙박권장 (S2)	상업업무 (S3)
영 업 및 관 매 시설군	위락시설	○	○	X
	판매시설	●	○	○(2층이하) 상점에 한함
	운수시설	X	X	X
	숙박시설	X	●	△
문 화 및 집 회 시설군	문화 및 집회시설	○ (마권관련시설, 경마장, 자동차 경기장 제외)	○ (마권관련시설, 경마장, 자동차 경기장 제외)	○ (마권관련시설, 경마장, 자동차 경기장 제외)
	종교시설	○ (종교집회장의 경우 당해용도가 건물의 부수용도인 경우에 한함)	X	○ (종교집회장의 경우 당해용도가 건물의 부수용도인 경우에 한함)
	운동시설	○(옥외골프 연습장 제외)	X	○(옥외골프 연습장 제외)
	관광휴게시설	X	X	X
산 업 시설군	공장	X	X	X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X	X	X
	자동차관련시설	○ (주차장, 세차장에 한함)	○ (주차장, 세차장에 한함)	○ (주차장, 세차장에 한함)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X	X	X
	창고시설	X	X	X
교 육 및 의 료 시설군	교육연구시설	○	X	○
	노유자시설	X	X	X
	수련시설	X	X	X
	의료시설	○ (정신병원 및 요양소, 격리병원 제외)	○ (정신병원 및 요양소, 격리병원 제외)	○ (정신병원 및 요양소, 격리병원 제외)
주 거 및 업 무 시설군	단독주택	X	X	X
	공동주택	X	X	X
	업무시설	○ (오피스텔 제외)	○ (오피스텔 제외)	● (오피스텔 제외)
	교정 및 군사시설	X	X	X
	방송통신시설	○(촬영소 제외)	○(촬영소 제외)	○(촬영소 제외)
	발전시설	X	X	X
기 타 시설군	제1종근린생활시설	○	○	○
	제2종근린생활시설	●	○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X	X	X
	묘지관련시설 및 장례식장	X	X	X

주) 1. ○ : 허용용도, ● : 권장용도, X : 불허용도, △ : 일반업무용지중 간선도로(대로2-2)에 접하지 아니한 필지에 한하여 숙박가능
 2. “부수용도”라 함은 건축연면적의 10% 이하를 차지하는 용도를 말한다.

■ 변경

<별표1> 상업업무시설 용지의 건축물 용도

구 분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KTX역세권 (S1, S4)	숙박권장 (S2)	상업업무 (S3)
영 업 및 매 시 설 군	위락시설	○	○	X
	판매시설	●	○	○(2층이하) 상점에 한함
	운수시설	X	X	X
	숙박시설	X	●	△
문 화 및 집 회 시 설 군	문화 및 집회시설	○ (마권관련시설, 경마장, 자동차 경기장 제외)	○ (마권관련시설, 경마장, 자동차 경기장 제외)	○ (마권관련시설, 경마장, 자동차 경기장 제외)
	종교시설	○ (종교집회장의 경우 당해용도가 건물의 부수용도인 경우에 한함)	X	○ (종교집회장의 경우 당해용도가 건물의 부수용도인 경우에 한함)
	운동시설	○(옥외골프 연습장 제외)	X	○(옥외골프 연습장 제외)
	관광휴게시설	X	X	X
산 업 시 설 군	공장	X	X	X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X	X	X
	자동차관련시설	○ (주차장, 세차장에 한함)	○ (주차장, 세차장에 한함)	○ (주차장, 세차장에 한함)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X	X	X
	창고시설	X	X	X
교 육 및 료 의 시 설 군	교육연구시설	○	X	○
	노유자시설	X	X	X
	수련시설	X	X	X
	의료시설	○ (정신병원 및 요양소, 격리병원 제외)	○ (정신병원 및 요양소, 격리병원 제외)	○ (정신병원 및 요양소, 격리병원 제외)
주 거 및 무 시 설 군	단독주택	X	X	X
	공동주택	X	X	X
	업무시설	○ (오피스텔 제외) (폐지)	○ (오피스텔 제외) (폐지)	● (오피스텔 제외) (폐지)
	교정 및 군사시설	X	X	X
	방송통신시설	○(촬영소 제외)	○(촬영소 제외)	○(촬영소 제외)
	발전시설	X	X	X
기 타 시 설 군	제1종근린생활시설	○	○	○
	제2종근린생활시설	●	○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X	X	X
	묘지관련시설 및 장례식장	X	X	X

주) 1. ○ : 허용용도, ● : 권장용도, X : 불허용도, △ : 일반업무용지중 간선도로(대로2-2)에 접하지 아니한 필지에 한하여 숙박가능
 2. “부수용도”라 함은 건축연면적의 10% 이하를 차지하는 용도를 말한다.

다. 주택건설용지(변경없음)

라. 공공 및 기타시설용지(변경없음)

4.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등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5.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6. 제1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김천시, LH 경북혁신도시사업단, 경상북도 개발공사에서 열람

경북 김천 혁신도시 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승인신청서

3)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가) 주거유형별 용지계획

구 분	면 적(m ²)	세대수(세대)	수용인구(인)	평균 분양면적(m ²)
합 계	748,709	10,451	26,127	—
단 독 주 택	156,836	531	1,327	—
이 주 자 택 지	43,825	161	402	264
협의양도인택지	113,011	370	925	330
공 동 주 택	591,873	9,390	23,475	—
6 0 m ² 이 하	45,359	942	2,355	73
6 0 m ² ~ 8 5 m ²	416,035	6,859	17,147	96, 109
8 5 m ² 초 과	130,479	1,589	3,973	149
복 합 용 지	35,053	530	1,325	165

주1) 면적합계시 복합용지 면적 제외

나) 가구별 단독주택용지계획

구 분	번 호	면 적(m ²)	세대수(세대)	수용인구(인)	비 고
합 계	—	156,836	531	1,327	
단독주택 용 지	단독1	7,753	29	73	
	단독2	40,224	138	344	
	단독3	7,713	28	70	
	단독4	19,135	62	155	
	단독5	16,444	52	130	
	단독6	14,588	47	117	
	단독7	30,456	103	258	
	단독8	8,762	31	78	
	단독9	11,761	41	102	